## 전출하시는 분께 (안내)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새주소지의 시구정촌의 관공서(시무소)에 전출증명서,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본인 확인 서류, 인감, 외국인주민의 경우는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함께 지참하고 수속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출하시는 분으로 아래의 제도에 해당되시는 분은, 각각의 창구에서 수속을 밟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해당 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지세한 대통단 등 해공 등 다 한국에 다합시고. <구약소 총무부・보건복지부・시세사무소, 기타스마 지소 시민과・보건복지과>					
제 도	전출시의 수속	창 구	새주소지에서의 수속		
인감등록	전출 예정일에 등록이 폐지됩니다. 전출 예정일 전날까지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창구 방문시 인감등록증과 전출증명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필요에 따라 전출하실 곳의 시구정촌에서 새로 수속을 밟아주세요.		
편의점 교부	전출신고 후에는 편의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복합복사기에서「인감등록증명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주민표」에 한하여, 전출예정일 전날까지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출하실 곳의 주소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편의점 교부를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통지 카드	【해외전출의 경우】 통지 카드를 지참해주세요. 수속 후 돌려드립니다.		전입신고시 통지카드를 지참해주세요. 뒷면에 새 주소를 기재합니다		
개인번호카드 (마이넘버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카드 (주기카드)	【전출·전입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를 지닌 분이 계신 세대가 시외로 전출할 경우 전출신고서를 제출(우편 가능)하면, 새 주소지의 시구정촌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카드를 제시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전출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주소지에서 계속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전출일이 14일 이상 지나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시민과	【전입특례·카드 계속이용수속】  ・새주소지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전출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카드를 지참하여 전입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입력 필요).  ・위의 전입신고 후 90일 이내에 카드 계속 이용수속을 밟으면, 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 이전 주소에서 개인번호카드를 신청한 경우,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구에서 상담해주세요.		
전자증명서	서명용은 주소의 변경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용자 증명서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용은 필요에 따라 신고해주세요. ※ 주기 카드에 새로 전자증명서를 탑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전출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시 보험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고령수급자증」을 지니신 분은, 수속시 함께 지참해 주십시오. 보험료 정산에 대해서는 설명 및 상담을 해드립니다. 현재, 병원을 다니고 계신 분으로, 건강보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분은 반드시 병원에 연락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계	전입시 신속하게 가입 수속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로 전출하시는 분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번호카드 또는 통지카드(갖고 있지 않다면 연금수첩) 및 인감을 지참하고 수속을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필요한 문도 세엽니다. 신고 필요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일본연금기구연금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고가 필요하신 분은 새주소지에서 「주소변경신고서」용지(엽서 형태)를 받으십시오)		노령연금・ 통산노령연금・ 장애연금・유족연금은 연금 사무소에 주소변경신고를 해 주십시오. 노령복지연금은 시구정촌의 연금담당과에서 수속을
	있습니다.	밟아 주십시오.
피보험자승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밖으로 전출하시는 분은 「부담구분등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 65 세 이상으로 장애인정을 받으신 분, 특정질병요양증을 교부받으신 분은 인정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호의료계 (후기 고령자 의료)	부담구분등증명서 (장애 인정 및 특정질병증명서를 교부받으신 분은 증명서) 를 지참하시고 전입신고 수속을 밟아주십시오.
수급자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제도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따라 다르므로, 전출하시는 시정촌의 의료비조성 담당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첩을 반납해 주십시오.	개호의료계 (복지의료)	전출하시는 곳에 같은 종류의 제도가 있는 경우,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제도가 도도부현 및
수급자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시정촌에 따라 다르므로, 전출하시는 시정촌의 의료비조성 담당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베시의 보험증을 지니고 계신 분은 신고하실 때 보험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보험료 정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또한, 개호필요 • 지원인정필요를 받고 있고, 필요하신 분께는 「수급자격증명서」를 교부합니다. 한편, 고베시 밖으로 전출하실 경우, 전출처가 특별양호노인홈 등과 같은 개호보험시설 등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십시오.	개호의료계 (개호보험)	계속하여 개호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호보험 창구에 개호필요 · 지원인정필요「전입자 계속」수속을 해 주십시오.
시외로 전출하시는 분은, 오른쪽 기재의 담당계에 승차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건강복지과 안심건강계 (보건복지과)	전출하시는 곳에 같은 종류의 제도가 있는 경우,
	건강복지과 어린이가정지원과 (보건복지과)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인감과 수첩을 지참해 주십시오.	건강복지과 (보건복지과)	전출하시는 곳의 시구정촌, 또는 복지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의 활용에 의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분의 주소변경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일부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신고 필요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일본연금기구연금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언고가 필요하신 분은 새주소지에서 [주소변경신고서] 용지(엽서 형태)를 받으십시오) 물 신고를 하고 서명을 하면, 인감을 생략할 수 9 퍼보험자증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밖으로 전출하시는 분은 [부담구분등증명서] 의 교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 65 세 이상으로 장애인정을 받으신 분, 특정질병요양증을 교부반으신 분은 인정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수급자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수급자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수급하실을 반납해 주십시오.  수급하실을 반납해 주십시오.  기계시의 보험증을 지니고 계신 분은 신고하실때 보험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수급자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수급하는 발함 주십시오.  수급하실을 하고 있고, 필요하신 분께는 [수급자격증명서] 를 반고 있고, 필요하신 분께는 [수급자격증명서] 를 자란 교부합니다. 한편, 고베시 밖으로 전출하실 경우, 전출처가 특별양호노인홈 등과 같은 개호보험시설 등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십시오.  시외로 전출하시는 분은, 오른쪽 기재의 담당계에 승차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의 활용에 의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분의 주소변경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일부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신고 필요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일본연금기구연금사무소로 문의해 주소변경신고서 명요하신 분은 새주소지에서 [주소변경신고서] 용지(임서 형태)를 받으십시오. (신고가 필요하신는 분은 「부담구분등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밖으로 진흥하시는 분은 「부담구분등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정질병요양증을 교부받으신 분은 인정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수급자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수급자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수급자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기호의료계 (복지의료)  기호의료계 (보건의료)  기호의료계 (보건의료계)  기호의료계

• 아동수당 [중학교 3 학년생까 지(15 세 도달 연도말까지)]	인감을 지참해 주십시오. ☆대상 어린이가 전출하는 경우 외에 수급받고 있는 보호자만이 전출할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복지계 어린이보건계 (보건복지과)	전출하시는 곳의 시구정촌 또는 복지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 아동부양수당 [18 세 도달 연도말까지(단, 특별아동부양수당수 급 아동은 20 세까지)]	인감과 증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세대원 일부의 전출, 세대원 전체의 전출, 둘 중 어느 쪽이라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임부건강검진수진권	전출하신 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부검진을 효고현 이외의 곳에서 받으시고 대납하신 경우는, 전출 수속을 밟기 전에 조성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의 경우, 지니고 계신 모자건강수첩을 지참하시고 새주소지에서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수속은 전출하시는 구약소·지소에서 밟아 주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구약소·지소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가시나다쿠☎ 841-4131 나다쿠☎ 843-7001 쥬오쿠☎ 232-4411 효고쿠☎ 511-2111 기타쿠☎ 593-1111 나가타쿠☎ 579-2311 스마쿠☎ 731-4341 기타스마지소☎ 793-1212 다루미쿠☎ 708-5151 니시쿠☎ 929-0001